

수원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7626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76268 판결

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가소20512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신용보증기금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변론종결2017. 5. 12.

판결선고2017. 6. 9.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가소20512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2. 5. 13.부터 1995. 6.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11. 2. 소외 부광유리공업 주식회사(이하 '부광유리공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부광유리공업이 신한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으로 사용하게 될 할인어음 채무에 대해 보증원금 5,000만 원, 보증번호 THS-1991-00979, 피보증인 부광유리공업, 보증기한 1992. 10. 21.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부광유리공업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소외 B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나. 부광유리공업은 1992. 3. 13. 당좌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92. 6. 29. 신한은행에 50,984,218원을 대위변제하면서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받았다.

다. 원고는 부광유리공업,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71259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2. 3. '원고에게, 부광유리공업은 89,194,023원과 그 중 87,209,271원에 대하여 1992. 6. 29.부터 1993. 2. 28.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7. 31.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B는 부광유리공업과 합동하여 위 돈 중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2. 5. 13.부터 1995. 6.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3.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을 영위해 오던 B가 그 사업의 실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외 주식회사 D를 설립하였다가 다시 피고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B가 운영하는 1인 회사에 불과하고 법인격이 형해화되었으므로, 피고는 B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E가 2014. 12. 31. 사업장의 모든 권리를 이전받아 피고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B의 1인 회사가 아니고 법인격이 형해화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발안농협 양감지점장, IBK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설립 목적은 스틸보빈 제조, 판매, 산업기계제작 등이고, 피고의 설립 목적은 보빈 제작 및 판매업, 유지보수업, 각종 기계제작, 부품가공 조립업 등으로 설립 목적이 유사하다.

② 피고 설립 당시인 2014. 3. 10. F의 발안농협 양감지점 계좌(G)에 예치된 1,000만 원으로 주금납입을 증명하였고, 위 돈은 같은 날 주식회사 포스코이엔지의 계좌로부터 'H가지금' 명목으로

입금되었으며, B의 딸 I이 2014. 3. 12. H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③ D의 매출거래처 135개 업체 중 24개 업체, 매입거래처 65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피고의 거래처와 일치한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를 운영하던 B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D을 설립하고 다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를 설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은 대표이사로 J, 감사로 K가 등기되어 있을 뿐이고, B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② D은 2001. 11. 26.에 설립되었다가 2007. 12. 2. 해산되어 2010. 12. 3.

청산종결간주되었는데, 피고는 D이 해산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4. 3. 13.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로 F, 사내이사로 L(이후 E)이 등기되어 있는 등 D과 인적 구성도 다르며, 두 회사의 거래처 역시 일부만 일치하는 등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E는 2014. 12. 31.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L으로부터 피고의 주식을 전부 양수하고 그 무렵 대표이사로 등기하는 방법으로 피고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B가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래니

판사박성민

판사차주희